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확대〉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646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확대	2

I. 개요

1.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664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성원의원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2. 18.

(3) 회 부 일 : 2024. 12. 1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약처의 경우 국외 시험·검사기관 및 ISO 17025 시험기관의 시험검사기관 유효기간에 맞추어 국내 시험·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였음.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 업계에서는 국제조화 등을 위해 ISO 기준 및 국외시험검사기관과 같이 유효기간을 4년으로 조정을 요구 중임.

이에 농산물품질 안전성검사기관의 유효기간도 국제기준에 맞추어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여 국내외 시험·검사 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4조제4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확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64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생략)	제64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u>3년으로</u>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 ----- ----- <u>4년으로</u> ----- ----- ----- -----.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61조¹⁾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농지·어장·용수(用水)·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64조²⁾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성조사 업무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2023년 6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식품·의약품 분야 국내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의 유효기간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 시험·검사기관 지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안전성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用水)·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유통·판매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2. 수산물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2) **제64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성조사 업무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성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업무 범위의 변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⑦ (생략)

정의 유효기간에 맞추어 3년에서 4년으로 확대되었음.³⁾

- 참고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은 식품·의약품분야의 시험·검사 및 시험·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이에 개정안은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도 3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내외 시험·검사 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과 관련하여 입법례를 살펴보면,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에서 5년이 일반적이며,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검사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할 기관(이하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⑨ (생략)

제7조(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국외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하여 시험·검사할 능력이 있는 기관(이하 “국외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수출국 정부(그 정부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설립한 공공검사기관

2.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검사기관의 지부를 포함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이 해외에 설립·운영하는 기관

제8조의2(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 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관련 입법례 >

[지정의 유효기간 3년]

「식물방역법」

제30조의3(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정밀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검사 업무를 계속하려는 정밀검사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사료관리법」

제20조의2(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료의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사료의 검사 등의 업무를 하려는 사료시험검사기관은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다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의 유효기간 4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④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학 및 민간연구소 등을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시험업무를 계속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농약관리법」

제17조의4(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약등 또는 원제의 약효, 약해, 독성, 잔류성 및 이화학적 분석 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 등을 갖춘 자를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시험 분야별로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지정의 유효기간 5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확인 및 살생물제의 승인 등을 위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3. (생략)

⑥ 제1항제3호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시험·검사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3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지정의 유효기간은 시험·검사기관이 지정 요건에 적합한지 점검⁴⁾하게 되는 주기와 관련된 것으로, 유효기간을 짧게 정할수록 시험·검사기관의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측면은 있으나, 잦은 재지정 심사가 시험·검사기관과 이를 평가하는 기관에 부담을 주는 측면도 있으므로, 개정안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 '24.12월말 기준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은 총 47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은 총 11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음.⁵⁾

□ 한편, 개정안과 같이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확대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다. 관계 부처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국내·외 시험·검사기관 또는 검정기관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개정안에 동의함.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다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야 한다.

5) [참고]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현황 참조

【참고】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현황 (‘24.12.31.기준)
-------------	---

□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

연번	기관명	검사분야 (유해물질항목)	지정일	유효기간	
				시작일	종료일
1	한국에스지에스(주)	농산물(잔류농약)	2024-12-07	2024-12-07	2027-12-06
2	(재)환동해산업연구원	농산물(잔류농약)	2024-12-07	2024-12-07	2027-12-06
3	농협경제지주(주)식품 알앤디연구소	농산물(잔류농약, 중금속), 농지(중금속)	2021-12-07	2021-12-07	2025-05-06
4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농산물(잔류농약, 중금속), 농지(중금속)	2024-12-07	2024-12-07	2027-12-06
5	전주대학교	농산물(잔류농약, 중금속), 농지(중금속), 용수(중금속)	2024-12-07	2024-12-07	2027-12-06
6	(주)한국분석기술연구원	농산물(병원성미생물, 잔류농약, 중금속)	2021-12-07	2021-12-07	2025-12-06
7	(주)한국유로핀즈 분석 서비스	농산물(잔류농약, 중금속), 농지(중금속), 용수(중금속)	2021-12-07	2021-12-07	2025-12-06
8	수원여자대학교 식품 분석연구센터	농산물(병원성미생물, 잔류농약, 중금속), 농지(중금속), 용수(중금속)	2024-12-07	2024-12-07	2027-12-06
9	(주)오에이티씨	농산물(병원성미생물, 잔류농약, 중금속), 농지(중금속)	2024-12-07	2024-12-07	2027-12-06
10	(재)창녕양파앤마늘식품 연구원	농산물(잔류농약, 중금속), 농지(중금속)	2021-12-07	2021-12-07	2025-09-06
11	(주)한국분석기술연구소	농산물(잔류농약, 중금속), 농지(기타.중금속)	2021-12-07	2021-12-07	2025-06-06

연번	기관명	검사분야 (유해물질항목)	지정일	유효기간	
				시작일	종료일
12	(주)동진생명연구원	농산물(중금속), 농지 (중금속), 용수(중금속), 자재(중금속)	2021-12-07	2021-12-07	2025-12-06
13	국립순천대학교 산학 협력단	농산물(잔류농약, 중금속), 농지(중금속)	2024-12-07	2024-12-07	2027-12-06
14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농산물(잔류농약)	2024-12-07	2024-12-07	2027-12-06
15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농산물(잔류농약)	2024-12-07	2024-12-07	2027-12-06
16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중금속), 용수(중금속)	2024-12-07	2024-12-07	2027-12-06
17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물(중금속)	2024-12-07	2024-12-07	2027-12-06
18	(주)그린하이	농산물(병원성미생물, 생물 독소, 잔류농약, 중금속), 농지(중금속)	2024-12-07	2024-12-07	2027-12-06
19	제일분석센타(주)	농산물(잔류농약, 중금속), 농지(중금속)	2024-12-07	2024-12-07	2027-12-06
20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농산물(잔류농약, 중금속)	2021-12-07	2021-12-07	2025-12-06
21	한국농식품분석연구소 (주)	농산물(잔류농약)	2024-12-07	2024-12-07	2027-12-06
22	(재)금산인삼약초산업 진흥원	농산물(잔류농약, 중금속), 농지(중금속)	2024-12-07	2024-12-07	2027-12-06
23	아이센(주)	농산물(잔류농약, 중금속), 농지(중금속)	2021-12-07	2021-12-07	2025-12-06
24	(주)에코아임친환경기술 연구원	농산물(잔류농약, 중금속), 농지(중금속)	2024-12-07	2024-12-07	2027-12-06

연번	기관명	검사분야 (유해물질항목)	지정일	유효기간	
				시작일	종료일
25	한국인터텍테스팅 서비스(주)	농산물(잔류농약)	2021-12-07	2021-12-07	2025-12-06
26	(주)씨티케이	농산물(병원성미생물, 잔류농약)	2024-12-07	2024-12-07	2027-12-06
27	(주)산업공해연구소	농산물(병원성미생물, 잔류농약, 중금속)	2024-12-07	2024-12-07	2027-12-06
28	(주)현농	농산물(잔류농약)	2024-12-07	2024-12-07	2027-12-06
29	(재)환경기술정책연구원	농산물(중금속)	2021-12-07	2021-12-07	2025-12-06
30	사단법인 KOTITI시험 연구원	농산물(병원성미생물, 잔류농약, 중금속)	2024-12-07	2024-12-07	2027-12-06
31	한경국립대학교 산학 협력단	농산물(잔류농약)	2024-12-07	2024-12-07	2027-12-06
32	(주)엔텍분석연구원	농산물(잔류농약)	2024-12-07	2024-12-07	2027-12-06
33	주식회사 네이처앤 바이오텍	농산물(잔류농약, 중금속)	2022-09-20	2022-09-20	2025-09-19
34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농산물(잔류농약, 중금속)	2022-12-13	2022-12-16	2025-12-15
35	(주)피캤코리아	농산물(잔류농약, 중금속), 농지(중금속)	2023-02-06	2023-02-06	2026-02-05
36	국립안동대학교 산학 협력단	농산물(잔류농약)	2023-11-16	2023-11-16	2026-11-15
37	주식회사 바이오푸드랩	농산물(잔류농약)	2024-05-24	2024-05-25	2027-05-24

연번	기관명	검사분야 (유해물질항목)	지정일	유효기간	
				시작일	종료일
38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농산물(잔류농약)	2024-05-24	2024-05-25	2027-05-24
39	(주)아워홈 식품연구원	농산물(방사능, 잔류 농약, 중금속)	2024-07-08	2024-07-09	2027-07-08
40	부설기관 동강생물 사업단	농산물(잔류농약, 중금속)	2024-07-08	2024-07-23	2027-07-21
41	주식회사 에스에이피 분석평가연구소	농산물(잔류농약, 중금속), 농지(중금속)	2022-05-18	2022-05-18	2025-05-17
42	(주)분석기술과미래	농산물(잔류농약)	2023-01-16	2023-01-16	2026-01-15
43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	농산물(잔류농약)	2023-08-16	2023-08-16	2026-08-15
44	(주) 세스코 시험분석 연구원	농산물(잔류농약)	2023-12-20	2023-12-20	2026-12-19
45	(주)티에스피분석연구소	농산물(잔류농약, 중금속)	2024-02-15	2024-02-15	2027-02-14
46	한울생명과학(주)	농산물(잔류농약)	2024-05-22	2024-05-22	2027-05-21
47	(주)캠바이오	농산물(잔류농약, 중금속)	2024-08-29	2024-08-29	2027-08-28

□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

연번	기관명	검사분야 (유해물질항목)	지정일	유효기간	
				시작일	종료일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물(방사능)	2023-08-11	2023-08-11	2026-08-10
2	한국에스지에스(주)	수산물(방사능)	2023-08-17	2023-08-17	2026-08-16
3	(주)이마트	수산물(방사능)	2023-10-17	2023-10-17	2026-10-16
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인천가공물류센터	수산물(방사능)	2023-10-24	2023-10-24	2026-10-23
5	포항시 수산물품질관리 센터	수산물(방사능)	2024-02-07	2024-02-07	2027-02-06
6	수협중앙회 감천항물류 센터	수산물(방사능)	2024-04-02	2024-04-02	2027-04-01
7	(주)한국수산방역기술 안전성 분석센터	수산물(중금속, 방사능)	2024-04-22	2024-04-22	2027-04-21
8	주식회사 라드솔	수산물(방사능)	2024-07-08	2024-07-08	2027-07-07
9	CJ프레시웨이(주) 식품 안전연구실	수산물(방사능)	2024-09-06	2024-09-06	2027-09-05
10	(재)한국화학융합시험 연구원	수산물(방사능)	2024-11-26	2024-11-26	2027-11-25
11	신일바이오	수산물(방사능)	2024-12-04	2024-12-04	2027-12-03

문 의 처

02)6788-5493